
2025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인권영향평가 결과

2025. 11.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1. 관련근거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국가인권위원회, '18. 8. 28.)
-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국가인권위원회, '22. 8. 16.)

2. 사업의 필요성

- 기업의 인권보호 및 존중 실현에 대한 국가적 요구가 증대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가치 실현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침해 및 피해 방지를 위한 노력 및 선도적 역할 필요
- 사후 구제절차를 통한 인권침해 해결방안 모색 방법에서 벗어나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진단하여 개선하는 등의 선제적 조치를 통한 예방적 차원의 인권증진 도모 필요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5. 8. ~ 11.
- 사업대상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 사업내용

가. 평가 제반 사항 준비

- 1) 전년도 도출된 개선 과제 이행 점검
- 2) 평가지표 개선 및 지표교육

※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개선' 용역 계약: 한국표준협회('25.4.18~25.9.30) 추진 중
 ※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담당자 대상 지표 교육('25.8.25)

나. 평가 및 결과 도출

- 1) 인권영향평가
- 2) 결과 및 개선 과제 도출
- 3) 평가지표 수정 사항 및 운영안 점검

II 주요 사업 결과

가. 평가 제반사항 준비

1) 인권영향평가 추진 개요

○ 평가개념

-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여 진단하기 위한 평가

○ 평가주체별 역할 체계

인권경영위원회 (평가위원)	주관부서 (윤리감사실)	피평가부서
● 평가지표 검토 및 확정 ● 평가실시 - 서면평가 및 담당자인터뷰 ● 평가결과 검토 및 최종 확정 ● 인권증진 및 개선 과제 발굴	● 평가총괄 - 평가대상 선정 및 지표개발 - 평가 과정 관리 및 안내 ● 평가위원 및 피평가부서 대상 평가지표 교육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 평가지표별 자가진단(Self-Check) 실시 및 증빙자료 취합 제출 ● 평가위원 인터뷰 대응 ●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과제 이행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체점검
- 국가인권위원회「인권경영 매뉴얼(2018)」을 바탕으로 ‘25년 인권 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개선’을 통하여 체크리스트 비교·분석, 최근 인권 이슈 등을 종합하여 진흥원 경영활동에 부합하는 항목을 선별·수정 및 개발하여 체크리스트 작성
- (평가기준) 각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 점수 부여

응답	응답기준
예	요구사항 등을 모두충족한 경우
보완필요	요구사항 등을 일부충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아니요	요구사항 등을 거의 충족하지 못하거나 없는 경우
정보없음	요구사항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없음	지표가 기관에 해당하지 않거나 평가가 불필요한 경우

- (점수 체계)

평가내용	충족(예)	보완필요	미충족(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점수미산출	점수미산출

※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정보없음, 해당없음)에 대해서는 평가점수 산출에서 제외

○ 평가추진 일정 및 세부내용 확정

	일정	추진사항	세부내용
(사전)	25.5. ~ 8.	지표 개선(용역)	○ '24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환류 점검 ○ 「인권경영 및 인권영향평가 개선」을 통하여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1단계	~ 8.31.	인권영향평가 지표 및 절차 확정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인권영향평가제반 사항 확정 ○ 인권영향평가 시행 전사 공표 및 주요 내용 안내
2단계	9.9. ~ 9.30.	인권영향평가 시행	○ 인권영향 평가위원 구성(내부2인, 외부3인) ○ 피평가부서별 전담 직원 선정 및 협조 사항 안내 ○ 평가부서별 인권영향평가 응답 및 증빙자료 제출 ○ 분야별 평가, 1차 결과 산출
3 단계	10.17.~10.31.	외/내부평가 및 결과 보완	○ 인권영향 외/내부 평가위원 평가 ○ 진흥원 옴부즈만을 활용한 절차 및 보정방법 점검 ○ 추가 증빙 자료 요청 및 결과 보정
4 단계	11.1.~	인권영향평가 결과 확정 및 개선방안 도출	○ 최종 평가 결과 및 주요 인권 이슈 도출 ○ 최종 결과 의결 및 중장기 인권경영 개선 방안 마련

2) 평가지표 점검

○ 「인권경영 매뉴얼」에 따른 평가 분야

- '25년 인권영향평가 지표 개선

기관운영			주요사업		
연번	분야	지표수	연번	분야	지표수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22	1	사업공통	10
2	고용상 비차별	7	2	가족센터사업	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7	3	가족친화사업	4
4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14	* 기관운영 지표 개선 항목 (분야) 8개 → 10개 (지표) 135개 → 114개 * 주요사업 지표 개선 항목 (분야) 4개 → 3개 (지표) 13개 → 18개		
5	산업안전 보장	11			
6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8			
7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9			
8	환경권 보장	11			
9	직원인권보호 (신설)	23			
10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신설)	2			

3) 평가대상 및 평가위원 선정 및 지표교육

○ 평가대상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피평가 본부	윤리감사실, 전략기획부, 경영관리부(지능정보화팀)	가족센터사업본부 가족친화사업본부
지표구성	10개 분야 27개 항목 114개 지표	2개 분야 18개 지표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

- 「인권경영지침」에 따라 인권경영위원회 구성하여 위원 중 일부가 평가위원이 되어 평가 실시

○ 지표교육 * 8.25.(월) 진행완료

- 교육 대상 : 인권영향평가 평가항목별 담당자
- 교육 내용 : ① 평가 개요 및 추진 일정
② 평가지표 및 세부 내용 등
③ 체크리스트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방법 등
- (피평가부서) 대내 공문을 통해 자료 전달 및 상시 문의 대응을 통해 평가 대응 지원

나. 평가실시 및 결과 도출

1) 평가실시

○ 평가 세부 진행방식

주체	추진사항	세부내용
피평가 부서	지표 답변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피평가부서 전담 직원 지정 ① 지표에 대한 자가평가(Self-Check)서 ② 지표별 증빙자료 작성하여 제출
주관 부서	평가	○ 피평가부서 제출자료 기반으로 ○ 필요에 따라 담당자인터뷰* * 자가 평가에 대한 추가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할 경우 질의 및 자료요구
주관 부서	평가 결과 취합 정리	○ 평가위원 평가 결과 취합 및 점수산출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2) 결과 및 개선과제 도출

[기관운영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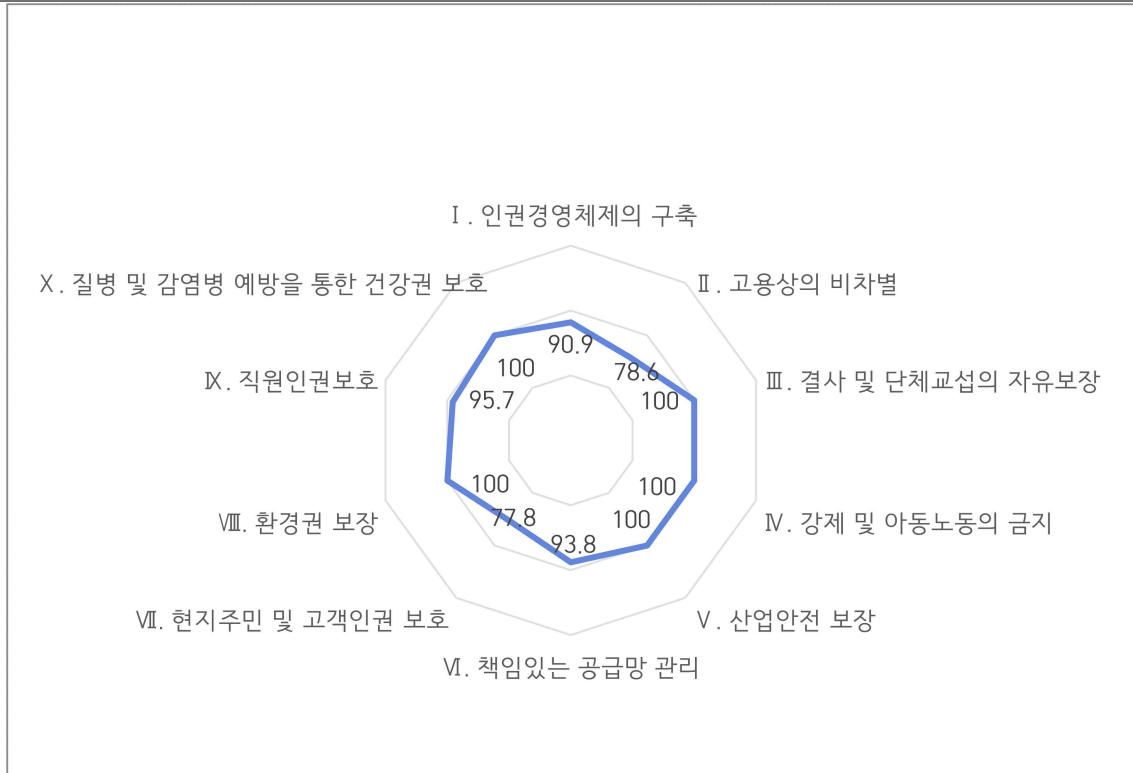
○ 평가결과 확정

- 점수 및 등급 산출 후 최종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 평가결과 : 95.89점

분야	충족도
I.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90.9
II. 고용상의 비차별	78.6
II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100.0
IV.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100.0
V. 산업안전 보장	100.0
V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93.8
VII.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100.0
VIII. 환경권 보장	100.0

IX. 직원인권보호	95.7
X.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100.0

결과그래프



○ 항목별 세부 평가결과

평가분야 및 항목	득점	만점	합계 (득점 / 만점)	환산점수 (100점만점)
I.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① 거버넌스 및 인권정책	12	12	40 / 44	90.9
② 인권정책 이행 제도화	6	6		
③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및 평가	9	10		
④ 부정적 인권영향 개선	6	8		
⑤ 구제 절차 마련(고충처리 장치 및 구제)	7	8		
II. 고용상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6	6	11 / 14	78.6
② 적극적 평등조치	5	8		
III.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처우 금지	6	6	14 / 14	100
②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8	8		
IV.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				
① 강제 노동의 금지	8	8	10 / 10	100
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0	0		
③ 연소자 고용금지 및 고용이 확인된 경우의 조치	2	2		
V. 산업안전 보장				
① 작업장 안전	10	10	22 / 22	100
②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8	8		
③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4	4		
VI.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① 협력 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및 모니터링	12	12	15 / 16	93.8
② 보안 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3	4		
VII.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인권 보장				
① 개인정보보호	10	10	18 / 18	100
② 정보인권보장	8	8		
VIII. 환경권 보장				
①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0	10	14 / 14	100
② 환경정보의 공개 및 비상계획 수립	4	4		
IX. 직원인권보호				
① 갑질근절	12	12	44 / 46	95.7
②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8	10		
③ 성희롱 성폭력 예방	12	12		
④ 일가정 양립	8	8		
⑤ 휴식권	4	4		
X. 질병 및 감염병 예방을 통한 건강권 보호				
① 건강 및 안전	4	4	4 / 4	100

[주요사업분야]

○ 평가결과 확정

- 점수 및 등급 산출 후 최종 결과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 평가결과 : 평균 100점

	가족센터사업		가족친화사업	
	득점/만점	환산점수	득점/만점	환산점수
합계	28 / 28	100	26 / 26	100
I. 사업공통	20 / 20		20 / 20	
II. 가족센터사업	8 / 8		-	
III. 가족친화사업	-		6/6	

○ 평가 총평

- “해당없음” 연관 문항에 대한 기관 특성 맞춤 지표 수정 및 삭제 검토 (7건)
- 인권영향평가 평가자 의견을 반영하여 증빙자료 추가 요청 후 점수 산정(7건)
- 추후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선
- 평가 미흡분야 기반 개선과제 도출

○ 인권경영위원회 주요의견

[지표 간소화 및 효율성 제고]

- 기관 특성과 맞지 않는 지표는 삭제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중복되거나 비효율적인 항목을 정리해 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기관 맞춤형 지표 선정]

-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선정 필요
(예) 기존 “여성채용” 지표를 “양성채용” 으로 변경하여 성평등 중심의 평가로 전환

[인권영향평가 기준 명확화]

-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평가기준을 ‘결과 중심’으로 할 것인지, ‘제도·절차 중심’으로 할 것인지 명확한 설정 필요
- 인권영향평가의 효율성과 합목적성 모두 고려 필요

○ 평가 미흡분야 기반 개선과제 도출

[기관운영]

[I.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_I-② 부정적 인권영향 파악 및 평가]

- (보완필요)인권 리스크 및 부정적 영향을 파악 및 평가하기 위한 절차는 기관 활동으로 인해 부정적 인권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해관계자 그룹의 참여를 보장한다.

[I.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_I-④ 부정적 인권영향 개선]

- (보완필요)공개한 개선 계획은 조직의 기능과 절차에 통합하는 방법, 시행 범위와 구체적인 조치, 이행성과 지표를 포함한다.
- (보완필요)개선조치 이행성과 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I.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_I-⑤ 고충처리 장치 및 구제]

- (보완필요)기관이 야기한 인권문제는 물론 기여하거나 사업관계로 연관된 인권문제로 인한 피해자 구제에 참여하는 절차를 구축하고 있다.

[II. 고용상의 비차별_II-② 적극적 평등조치]

- (보완필요)기관은 이사회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이사 비율 제고와 이해관계자 다양성 구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이행하고 있다. /기관은 여성에 대한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고 의사결정 절차에서 여성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잠정적인 우대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관련 법적 기준 준수를 넘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고용상 우대조치를 수립, 시행 중에 있다.

[Ⅳ. 강제 및 아동노동의 금지_Ⅳ-②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Ⅳ-③ 연소자 고용을 알게 된 경우의 조치]

- “해당없음” 문항에 대한 기관 특성 맞춤 지표 수정 및 삭제 검토 필요

[Ⅵ.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_Ⅵ-② 보안담당 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 (보완필요)기관의 보안담당 직원은 인권보호와 관련한 별도의 교육을 받는다.

[Ⅷ. 환경권 보장_Ⅷ-② 환경정보의 공개 및 비상계획 수립]

- (보완필요)환경훼손과 환경재해를 방지하거나 완화하고 통제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수립한다. /기관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정해진 비상사태 대응지침에 따른 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기관은 비상사태 대응계획을 해당 지역 및 당국과 함께 개발했으며, 현지 주민도 대피를 포함하여 비상시 대응방법을 알고 있다. /기관은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지역사회, 관련 당국, 외부 비상사태 관련 용역업체에게 즉시 통보할 수 있는 경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Ⅸ. 직원인권보호_Ⅸ-②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 금지]

- (보완필요)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실태파악을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주요사업_가족친화사업]

- (추후 기관 특성을 반영하여 수정 필요)국제결혼 피해자 등 법률 취약계층을 위한 즉각적 법적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 인권경영위원회 의결 결과

[2025년 인권경영위원회 서면 개최 결과]

- 개 최 일 : 2025. 11. 11.(화)
- 안 건 : [2025-2-1] 2025년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과제
- 의결결과 : 위원 5명 전원 원안 승인

III

향후 계획

- 조사 결과 대내·외 공표 및 개선사항에 대한 소관부서에 개선과제 전달 후 2026년 연중 과제 이행 모니터링 실시
- 2026년 인권경영 추진계획 수립 시 평가결과 및 인권경영위원회 심의위원 제언사항 등을 바탕으로 개선과제 도출 및 이행